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. 10. 28 선고 2021가단7602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득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0. 2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대 720㎡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05. 12. 30. 접수 제606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3. 일부각하 부분

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·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·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,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·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(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2000다5640 판결).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

판사 윤영석

별지